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절차 합리화로 응시자 권리 보호 강화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963년 제정 이후, 채용 신체검사 규정 근본적으로 개선

I.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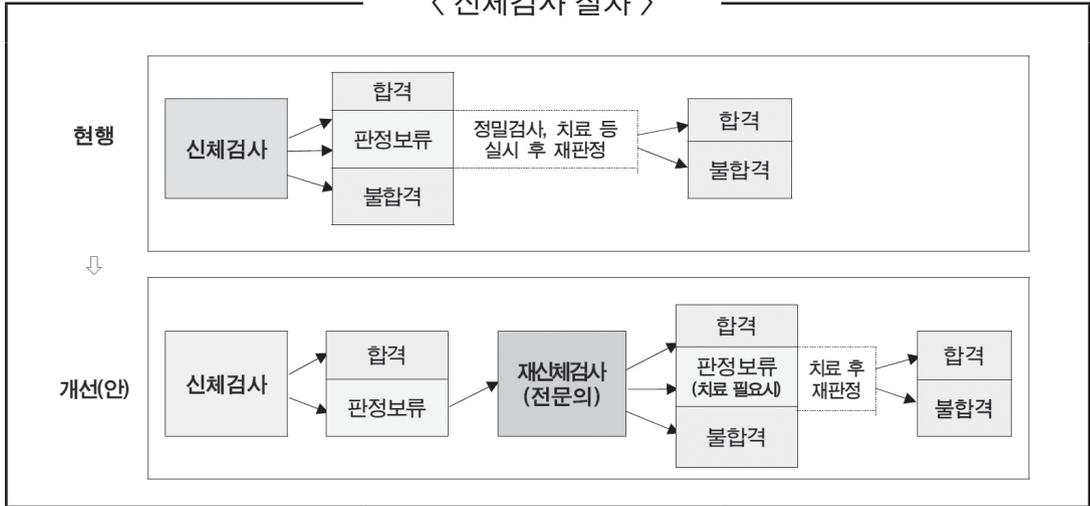
◇ 불합격 판정 기준 개선: (현행) 14계통 53항목 → (개정) 13계통 22항목

◇ 신체검사 절차 개선: (현행)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 판정

→ (개정) 불합격 판정 전에 관련 질환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 실시

- 1963년 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이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병률이 미미하거나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 제외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중)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된다.
 -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은 삭제된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 일부 기준은 획일적 기준이 아닌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예를 들어, ‘중증인 고혈압증’은 ‘고혈압성 응급증’으로,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을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로 바뀐다.
 -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된다. 예를 들어,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을 ‘중증 심혈관질환’으로, 혈소관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을 ‘중증 혈액질환’으로 바뀐다.
-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의 검사로 합격·불합격을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재신체검사를 통해 최종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외에도 임신부의 경우에는 엑스레이(X-ray) 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응시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

〈 신체검사 절차 〉



4. 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에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효과가 기대된다.

II.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불합격 판정 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14계통, 53항목 → (개정) 13계통, 22항목 - 불합격 기준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은 13개 항목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식도협착, 턱관절 질환, 중증 요실금 등 -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기준 개선 - 유사 질병이 제외되지 않도록 세부병명으로 열거된 질환 통합
신체검사 실시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신체검사 → (개정) 신체검사, 재신체검사(전문의) - 신체검사에서는 합격·판정보류 판정 - 재신체검사에서는 신체검사의 판정보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합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기타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격 판정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반영해 의료기관 및 신체검사서 서식 개선 ○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규정 ○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문진표를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